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진연구자 지원 근거 신설 등〉

■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46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및 별도 연구개발사업 기획 (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2
※ 참고자료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9
2.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	1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수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6. 4. 21.

다. 회 부 일 : 2026. 4.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연구 현장은 여전히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신진연구자들은 불안정한 지위와 연구 기회 부족으로 인해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와 우수 인력의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및 별도 연구개발사업 기획(안 제5조제10호 및 제9조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 안 제5조제10호는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9조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14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은 안 제9조제4항의 신설에 따른 항 번호 변경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정부의 책무) ----- ----- ----- -----.
1. ~ 9. (생략)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현행	개정안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 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 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신진연구자(이하 “신진연구자” 라 한다)의 창의적·도전적 연 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연구개 발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진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 인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제3항 및 제4항에- -----기획 및 별도 기획의 -----제5항에----- -----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

나. 검토의견

- 신진연구자 단계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독립적인 연구주제를 형성하고 연구책임자로 성장해 나가는 시기로서, 이들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정부의 책무로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제3호 및 제4호)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9조제1항 및 제3항)²⁾.

- 이에 개정안은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학문·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 9. (생략)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관련 연구개발예산의 확보 근거를 명시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진연구자에게 독립적인 연구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이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안 제5조제10호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현행 제5조제3호 및 제4호가 이미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연구환경 조성은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어 신진연구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부분은 현행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한편, 안 제5조제10호는 신진연구자를 특정하여 관련 연구개발예산의 확보까지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신진연구자 지원을 특별히 강조할 정책적 필요성과 정부 책무에 특정 연구자 집단의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9조제4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진연구자 대상 연구개발사업을 별도로 기획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 실증, 시설·장비 구축 등 목적과 수행방식이 다양하므로 각 중앙행정기관에 일률적으로 별도 사업의 기획을 의무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별도 사업을 일률적으로 기획하도록 할 경우 부처별 연구개발 수요 및 사업 특성과 관계없이 유사한 소규모 사업을 분산하여 운영하거나 기존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참고2: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발생할 수 있음.

-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은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방법 외에도 기존 사업 안에 신진연구자 전용 과제 또는 지원유형을 두는 방법 등으로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이 사업의 목적·특성과 신진연구자의 연구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은 신진연구자의 범위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 제9조의4제1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함. 그런데 해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에서 신진연구자의 정의와 박사후연구원과의 관계 등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현행법 개정안의 인용조문과 지원대상도 함께 정비되어야 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현행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이미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과 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5조제10호의 별도 신설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236

참고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18453호,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현행	개정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의2. (생략) 1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 신진연구자의 양성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2. ~ 7. (생략) ④ (생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 ---신진연구자 및 제9조의6제1항에 따른 학생연구자의----- ----- 2.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① 정부는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이라 한다)의 경력 설계 및 개발 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의4(이공계 신진연구자 지원) ① -----신진연구자[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사람으로, 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취득 후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현행	개정안
②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이공계 <u>박사후연구원</u> 지원에 관한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 ② ----- -----<u>신진연구자</u>-----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① ----- ----- ----- -----<u>있는 사람 또는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이공계 신진연구자</u>----- ----- ----- ----- ----- -----. ② (현행과 같음)

참고2

박사후연구원 및 신진연구자 대상 과기부 사업(2026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8.)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대상	핵융합선도기술개발사업 (1160-301)	Korea-ITER 박사후연구원 지원	한국인 신진인력 대상 ITER 국제기구 근무를 통한 주요 기술분야 박사후 연구원 연구 지원	1,044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1)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52,50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3)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26,250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5)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운영비 지원 (2231-402)	AI 국가대표 양성 (InnoCORE)	국내·외 최고 수준 박사후연구원을 확보하고, 산·학·연 연구진과의 집단·융합연구를 통한 글로벌 연구자로의 성장 지원	13,125	박사학위 취득 5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
	인재활용 확산지원 (1744-412)	전략기술 박사후 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박사후연구원이 참여하는 국가 전략기술 분야 산학연 컨소시엄을 지원하여 전략기술 연구 성과 창출 및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경력 형성 도모	1,950	전략기술 유관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사업 신청 대학 또는 출연연과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협약체결 전까지 고용 예정인 자
	세종과학 펠로우십	국내트랙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가 원하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핵심과학기술인재로 성장·정착할 수 있도록 펠로우십을 통한 연구 몰입 장려	131,102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이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내용	2026년 예산	박사후연구원 또는 신진연구자 정의
		국외연수 트랙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로 성장하여 국가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2,100	국내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복귀·유치 트랙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우리나라 젊은 연구자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역량 있는 외국인 박사급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정착을 추진	26,000	해외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①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이거나 ②만 39세 이하인 연구자 중, 국내대학 아공분야 전임교원이 아닌자 또는 국공립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 등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자
그 외 신진연구자 대상	개인기초연구 (1234-301)	개인기초연구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 기반 확충 및 수월성 배양을 위한 창의적 연구 지원	497,523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인 대학 전임 교원 및 연구소 정규직 연구원
	AI최고급신진연구자지원 (2232-316)	AI스타 펠로우십지원	AI 융합 분야 산학협력 연구 기반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최고(Global Top-tier) 수준의 AI 인재 양성	34,000	ICT분야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대학(원)
	나노·소재 기술개발 (1139-301)	소재글로벌 영커넥트	신진연구자의 국가전략기술분야 미래소재 연구를 지원하여, 기술난제를 해결하고 리더십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22,725	만 40세 이하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아태이론 물리센터지원 (1235-404)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강화	아태 연구 거점(아태이론물리센터)을 중심으로 신진연구자의 국제 공동연구와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여 국내 연구수준 향상 추진	5,073	연구시작일 3개월 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자